#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58 발의연월일: 2025. 1. 15.

발 의 자:윤재옥・김기웅・정성국

박충권 · 서천호 · 이인선

최보유 • 진종오 • 백종헌

최수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위험관리 및 기능유지의 전문 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전검(이 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및 성능평가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 행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 설계 ·시공·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에게 대행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 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 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등).

#### 법률 제 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 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 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 진단전문기관
-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 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205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제65조제3항제1호의3 중 "제26조제3항을"을 "제26조제4항을"로 한다.

법률 제205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제67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법률 제205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제67조제3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2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 행자로 선정된 자
- 2의3. 제4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대행하
	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
	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
	<u>다.</u>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
	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
	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
	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
	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③ • ④ (생 략)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 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필요하여	국토교통	투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u>④·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①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인 안전진단전문기관
-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 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 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③ ~ ⑦ (생 략) 법률 제205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5조(벌칙)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1의2. (생략)
  - 1의3. <u>제26조제3항을</u> 위반하여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 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 하도록 요구한 자
  - 2. ~ 7. (생략)

법률 제205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6. (생 략) <신 설>

③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5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5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u>수</u> )
③
<u>.</u>
1.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26조제4항을
2. ~ 7.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55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2)
1 0 (취되게 하수)
1.~ 6. (현행과 같음)
6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

7. · 8.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3. (생략)

④・⑤ (생 략)

단	대형	]자를	순	l 정한	자	및	대
행 :	자로	선정의	된	자			

7. · 8. (현행과 같음)

(3)	 	 	 	 	 	
	 	 	 	 	 	_

1. • 2. (현행과 같음)

- 2의2.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안전점검 대행자를 선정한 자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 2의3. 제4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 3.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